보상위원회 운영규정

2026. 3. 26

주 식 회 사 광 주 신 세 계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보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등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 (이하 “위원” 이라 한다) 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중도 퇴임 등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 발생 시, 차기 이사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구성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독립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독립이사인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1월과 7월 및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전에 개최하며, 부의 사항이 없을 시에는 개최하지 않는다.

③ 임시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 (회의의 성립 및 결의)

① 위원회의 회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정관 및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부의사항

제 10 조 (부의사항)

①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상정할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2. 임원 성과급 지급 금액
3. 등기임원의 연봉조정율에 대한 사항
4. 미등기 임원의 연봉조정율에 대한 사항
5. 기타 임원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경영이사회 부의 안건은 보상위원회 심의 의결 후 별도 상정한다.

제 11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2 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1주일)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의사록)

①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 5 장 보 칙

제 14 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지원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15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